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친숙한 용어로 자리 잡아 마약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사업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바.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연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 사용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